

과태료 지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12조 및 제39조제2항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6. 11.

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장



1. 건 명: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12조 위반에 대한 '과태료 지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' 공시송달
2. 근 거: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,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12조 및 제39조제2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	사업자등록번호	주소	대표자명	과태료부과 예정액	공시송달 내용
○○○샷골비 구미○점	835-15-*****	○ 김천시 금음길65- * ○ 구미시 인동북길 **	이○○	총 1,500,000원	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위반 과태료 부과 예정, 2026. 5. 22.까지 지진납부 또는 의견제출 안내 (자진 납부 시 감경금액 1,200,000원)

4. 공고기간: 2026. 6. 11.~ 2026. 6. 25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노동기준조사과(노동감독관 김혜경, 054-450-3516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